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환경부 자료 제공 -

환경부는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을 종전의 안전처리 및 단순 재활용에서 발생억제와 자원화 확대로 전환하고자 제명을 「자원순환사회형성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법 전반에 걸쳐 자원순환의 개념과 원칙의 반영을 강화하고, 제품 및 개발사업의 자원 순환성 평가·사업장 폐기물의 감량화·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순환자원을 이용한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새로 규정하거나 강화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조기에 정착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법률을 개정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편집자 주 -

## 주요내용

가.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자원순환사회형성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

나. “자원순환사회”, “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 회수”, “재활용” 등의 용어를 신설하고, “재활용”의 개념에 “재사용·재생이용·에너지회수”를 포함하도록 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을 “순환자원”으로 용어 변경(안 제2조 개정)

다. 자원순환사회의 기본원칙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발생한 폐기물의 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회수, 적정처리 등을 명시(안 제2조의2 신설)

라. 자원순환사회형성 및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내지 6조 개정)

마. 환경부 장관은 자원순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자원순환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개정)

바. 대통령이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들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지키도록 하고, 이 지침에 따른 자원순환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개정)

사. 환경부장관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제조자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아. 도시개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에 앞서 자원의 순환이용이 용이한 구조와 자재의 선택 등에 관하여 고려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단독주택·공동주택 또는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불박이 장 등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개정)

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차. 환경부령이 정하는 제조자는 유통된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제품 또는 부품을 새로운 제품의 제조에 재사용하거나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15조 신설)

카. 에너지회수시설은 에너지회수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회수된 에너지의 공급체계 및 수요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4조의2 신설)

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의 최종처리에 앞서 재활용의 촉진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처리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5 신설)

파.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및 처리 등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를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폐기물의 순환이용 성과를 평가하여 자원순환시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4조의6 신설)

하.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7 신설)

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8 및 제34조의9 신설)

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가 자원순환성 평가·부품 등의 재사용·전처리시설 설치·국제협력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형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형성을 위한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신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자원순환사회형성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물질순환의 과정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호의2 내지 제2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5호 내지 제7호중 “재활용가능자원”을 각각 “순환자원”으로 하며, 동조제10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원순환사회”라 함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물질순환의 과정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를 말한다.

2. “순환자원”이라 함은 폐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 또는 에너지회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의2. “재활용”이라 함은 순환자원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제2호의5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2의3. “재사용”이라 함은 순환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2의4. “재생이용”이라 함은 순환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2의5. “에너지회수”라 함은 순환자원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동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자원순환사회의 기본원칙) ① 원재료·제품 등을 제조·가공·수입·판매(건설공사를 포함한다) 또는 소비하는 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유해성을 줄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1. 발생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는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여야 한다.

2.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기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는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사용·재생이용 또는 에너지회수가 불가능 한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감량화시설”이라 함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중 “자원재활용”을 “순환이용”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제2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이하 “기본원칙”이라 한다)에 따라 자원순환사회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2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 원재료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원재료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재활용을 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제품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에는 재활용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기본원칙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품을 가능한 장기간 사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이 적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순환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중 “재활용기본계획”을 “자원순환기본계획”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및 제5항중 “자원재활용계획”을 “자원순환집행계획”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순환사회촉진을 위한 기본방침 및 추진목표
2.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 순환이용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3. 자원의 순환이용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자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장 내지 제4장을 제2장으로 하여 제2장의 제목을 “자원순환사회형성 등”으로 하고, 동장에 제1절 내지 제3절을 신설하며, 제1절은 제8조 내지 제12조로 하여 동절의 제목을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으로 하고, 제2절은 제12조의2조 내지 제15조의3조로 하여 동절의 제목을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재사용촉진 등”으로 하며, 제3절은 제16조 내지 제30조로 하여 동절의 제목을 “폐기물의 재활용촉진 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자원의 절약)”을 “(자원의 절약 등)”으로 하고, 제1항중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



하도록”을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를 제8조의2로 하여 제8조의2(중전의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 등은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폐기물이 되는 경우 재활용 및 처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제품의 자원순환성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지켜야 한다.

1.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의 재활용 및 적절한 처리를 위한 재질·구조에 관한 사항
2.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의 중량과 부피에 관한 사항
3.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품의 내구성 등

②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결과를 소비자·사업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폐기물의 감량화) 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감량화시설의 설치·생산공정의 개선·기술개발 및 재사용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배출자가 기술개발·공정개선 및 재사용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의 감량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폐기물 감량을 위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감량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감량화에 관한 기술의 진단 및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를 “판매하는 자”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포장을 유도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여 제조자등에게 보급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의 “1회용품”을 “1회용품(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① 도시의 개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함으로써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지침 등을 마련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및 설계시 자원의 순환이용이 용이한 구조와 자재의 선택
2. 개발사업 시행시 순환자원의 사용
3.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적정한 처리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11호에 의한 단독주택·공동주택 또는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불박이장 등 수납공간이나 불박이식의 집기 또는 비품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동조제3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중전의 제4항) 및 동조제6항(중전의 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
2.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정도
3.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수체계와 그 처리 비용

제15조를 제12조의2로 하고 제12조의2(중전의 제15조)의 제목을 “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재활용가능자원”을 각각 “순환자원”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분리배출 표시”)를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① 환경부령이 정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자”라 한다)는 유통된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제품 또는 부품을 회수하여 새로운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의제조자 등은 부품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품 또는 부품의 재사용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를 제15조의2로 한다.

제22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한다.

제20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제23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중 “재활용가능자원”을 각각 “순환자원”으로 한다.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시설(이하 “에너지회수시설”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된 결과 제2조제2호의5에 의한 에너지회수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회수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검사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에너지회수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입폐기물의 성상 및 에너지회수 효율 등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제24조의2 (에너지회수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에 의한 에너지회수시설 및 제34조의5에 의한 전처리시설 등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의 공급체계 및 수요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중 “지정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를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질(이하 “부산물”이라 한다)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부산물(이하 “지정부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사업자”로 한다.

제5장을 제3장으로 하여 장제목을 “자원순환사회의 기반 조성”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중 “자금”을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자원재활용”을 “순환이용”으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4조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제34조의4제1항 및 제3항중 “재활용가능자원”을 각각 “순환자원”으로 한다.

제34조의5 내지 제34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5(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의 최종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처리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2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최종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의6(자원순환사회의 평가기준 및 지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천연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및 처리 등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지표를 설정·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지표에 따라 폐기물의 순환이용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원순환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의7(자원순환 정보의 제공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적정한 처

리에 관한 지식·정보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적정한 처리에 관한 지식·정보 등을 생산·보급하고 국내 발생 및 수·출입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의8(협약의 체결)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재활용사업자·제조사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9(자원순환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① 국가는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교류 및 제공, 국제회의의 유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원의 순환이용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자원의 순환이용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자원의 순환이용에 관한 전시회·세미나의 개최
4.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5. 기타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장을 제4장으로 하고, 제4장(중전의 제6장)에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재정적·기술적 지원) 국가는 자원순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8조의2의 따른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2. 제15조의2에 따른 제품자등이 제품 또는 부품을 재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 및 시설 설치 등
3. 제34조의5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4. 제34조의9에 따른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형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5조의3(법제상의 조치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형성을 위한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11호”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동항제6호 및 동항제8호 내지 제14호”로 한다.

1.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는 제조자등
2.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3.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등
4.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5.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6. 제12조의2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7.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제품 가격에 회수·재사용보증금을 포함시킨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8.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9.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10. 제22조에 따른 제품 가격에 회수·재사용보증금을 포함시킨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11.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12.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13.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4.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조합

제37조 본문외 제1호중 “자원재활용”을 “자원의 순환이용”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15조제2항”을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폐기물감량지침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에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한 자
5. 제14조에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6. 제15조의2제2항에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7. 제15조의2제3항에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8. 제15조의3제1항에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9. 제21조제1항에 위반하여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4조에 위반하여 검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1. 제2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하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자원순환사회형성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 제51호 및 제52호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자원순환사회형성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집행할 자와 그 직위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러목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자원순환사회형성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터목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자원순환사회형성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로 하고, 동조제13호노목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터목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자원순환사회형성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하며, 동조제13호노목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자원순환사회형성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자원순환사회형성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제4호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자원순환사회형성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⑧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자원순환사회형성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한국환경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자원순환사회형성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13호, 제4조제7호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자원순환사회형성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및 제17조제1항제3호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자원순환사회형성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자원순환사회형성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p> <p>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 설)</p> <p>1. “재활용가능자원”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p>	<p>자원순환사회형성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p> <p>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물질순환의 과정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_____.</p> <p>1. “자원순환사회”라 함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물질순환의 과정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를 말한다.</p> <p>2. “순환자원”이라 함은 폐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 또</p>

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 및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제외한다)을 뜻한다.

2. "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

<신 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

<신 설>

<신 설>

<신 설>

3. "부산물"은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뜻한다.

4. "지정부산물"은 부산물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산물을 뜻한다.

5. "재활용제품"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

6. "재활용시설"은 재활용가능자원 또는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조립·정비·수집·운반·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뜻한다.

7. "재활용산업"은 재활용가능자원 또는 재활용제품을 제조·

는 에너지회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부산물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 및 폐열을 포함하되

<삭 제>

2의2. "재활용"이라 함은 순환자원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제2호의5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2의3. "재사용"이라 함은 순환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2의4. "재생이용"이라 함은 순환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2의5. "에너지회수"라 함은 순환자원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동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삭 제>

※ 관련조문(제25조)에 규정

<삭 제>

※ 관련조문(제25조)에 규정

5. -----순 환 자 원  
-----.

6. -----순 환 자 원  
-----



가공·조립·정비·수집·운반·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뜻한다.

8.~9. (생략)

10. "1회용품"은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

〈신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신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이하 "자원재활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정책에

\_\_\_\_\_.  
7. \_\_\_\_\_순환자원 \_\_\_\_\_  
\_\_\_\_\_.

8.~9. (현행과 같음)

〈삭제〉

※ 관련조문(제10조)에 규정

11. "폐기물감량화시설"이라 함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의2(자원순환사회의 기본원칙) ①원재료·제품 등을 제조·가공·수입·판매(건설공사를 포함한다) 또는 소비하는 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유해성을 줄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1. 발생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는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여야 한다.
2.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기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는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사용·재생이용 또는 에너지회수가 불가능한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3 조 ( 다 른 법 률 과 의 관 계 )  
\_\_\_\_\_순환이  
용" \_\_\_\_\_  
\_\_\_\_\_.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제2조의2에 따른 자원순환사회의 기본원칙(이하 "기본원칙"이라 한다)에 따라 자원순환사회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의 정책에 따

<p>따라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p> <p>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p> <p>②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제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6조 (국민의 책무) 국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p> <p>제7조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산업현황 등 자원재활용여건에 관한 사항</li> <li>2. 자원재활용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li> <li>3. 자원재활용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자원조달 및 투자계획</li> <li>4.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li> </ol> <p>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p>	<p>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p> <p>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제2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 원재료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원재료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재활용을 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p> <p>②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제품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에는 재활용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p> <p>제6조(국민의 책무) ①국민은 기본원칙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품을 가능한 장기간 사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이 적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국민은 순환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p> <p>제 7 조 ( 자 원 순 환 기 본 계 획 의 수 립 등 )</p> <p>①-----자원순환기본계획-----.</p> <p>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원순환사회촉진을 위한 기본방침 및 추진목표</li> <li>2.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 순환이용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li> <li>3. 자원의 순환이용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자원조달 및 투자계획</li> <li>4.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li> </ol> <p>〈현행과 같음〉</p>
--	--



에게 알리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투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신 설〉

제8조 (자원의 절약) ①정부는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은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장치·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의 준수사항) ①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의 제조·수입·가공·수립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한 재질·구조에 관한 사항
2.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
3. 제품설계시 분리수거 및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신 설〉

※ 현행 「폐기물관리법」제2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④----- 자원 순환 집행 계획-----.

⑤-----자원순환집행계획-----.

제2장 자원순환사회형성 등

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제 8조 (자 원 의 절 약 등 )

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

②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도록 -----.

제8조의2(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폐기물이 되는 경우 재활용 및 처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지켜야 한다.

1.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의 재활용 및 적절한 처리를 위한 재질·구조에 관한 사항
2.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의 중량과 부피에 관한 사항
3.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품의 내구성 등

②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결과 소비자·사업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의3(폐기물의 감량화) ①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감량화시설의 설치·생산공정의 개선·기술개발 및 재사용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제9조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2 (생략)
- ②~④(생략)
- 〈신설〉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백화점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신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폐기물배출자가 기술개발·공정개선 및 재사용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의 감량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폐기물 감량을 위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감량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감량화에 관한 기술의 진단 및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 9 조 ( 포 장 폐 기 물 의 발 생 억 제 )

①-----판매하는 자-----

—

- 1, 2 (현행과 같음)
- ②~④(현행과 같음)

⑤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포장유 유도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여 제조자등에게 보급할 수 있다.

제 10 조 ( 1 회 용 품 의 사 용 억 제 등 )

-----1회용품(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삭제〉

제11조(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①도시의 개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함으로써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폐가구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불박이장 등 수납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 (폐기물부담금) ①(생략)

〈신설〉

②(생략)

③(생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제채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폐기물부담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⑥(생략)

제3장 폐기물 재활용의 촉진

제15조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 ①,②(생략)

제1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환경부장관은 재활용 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생략)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

필요한 지침 등을 마련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및 설계시 자원의 순환이용이 용이한 구조와 자재의 선택

2. 개발사업 시행시 순환자원의 사용

3.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적절한 처리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11호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 또는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불박이장 등 수납공간이나 불박이식의 집기 또는 비품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 (폐기물부담금)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

2.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정도

3.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수체계와 그 처리 비용

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⑤제4항 \_\_\_\_\_

\_\_\_\_\_.

⑥\_\_\_\_\_제4항 \_\_\_\_\_

\_\_\_\_\_.

⑦(현행과 같음)

제2절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재사용 촉진 등

제12조의2(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①,②(현행과 같음)

제13조 (순환자원의 분리수거 등) ①\_\_\_\_\_ 순환자원 \_\_\_\_\_

----- 순환자원 \_\_\_\_\_

\_\_\_\_\_.

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 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비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개정 2005.12.29>)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 또는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비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들은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비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기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한한다)에게 비용기의 보관 및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④용기의 규격별 비용기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 등 빈 용기의 원활한 회수·재사용을 위하여 제품의 제조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제22조의2(비용기보증금 잔액의 용도) 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반환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②(현행과 같음)

③\_\_\_\_\_순환자원의

제15조(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①환경부령이 정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제조자"라 한다)는 유통된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제품 또는 부품을 회수하여 새로운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의 제조자 등은 부품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품 또는 부품의 재사용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비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①~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비용기보증금 잔액의 용도) ①~② (현행과 같음)



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빈 용기의 회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
2. 빈 용기의 보관 및 수집소의 설치·지원
3. 빈 용기의 효율적 회수 및 재활용 방안의 연구·개발
4. 전년도의 받은 빈용기보증금액 보다 빈용기보증금의 지급 금액이 많은 경우의 그에 대한 보전
5. 그 밖의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 계획 및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 내지 제19조 (생 략)

제20조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6. (생 략)

〈신 설〉

제23조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①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활용제품의 종류별 재활용가능자원(부산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 목표 및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계획 작성 및 재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에 관한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4. (생 략)

〈신 설〉

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촉진 등

제16조 내지 제19조 (현행과 같음)

제20조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 1.~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제23조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①순환자원

②

1. 순환자원

2. 순환자원

3. 순환자원

4. (현행과 같음)

제24조(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시설(이하 "에너지회수시설"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된 결과 제2조제2호의5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회수시설의 적절한 설치·운영여부

<p>〈신 설〉</p> <p>제25조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①지정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p> <p>②(생략)</p> <p>제4장 재활용공제사업조합</p> <p>제27조 내지 제30조 (생략)</p> <p>제5장 재활용산업의 육성</p> <p>제31조 (자금 등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을 앞선할 수 있다.</p> <p>1. (생략)</p> <p>〈신 설〉</p> <p>3.~6. (생략)</p> <p>②, ③ (생략)</p> <p>제34조의4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검사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환경부장관은 에너지회수시설의 적절한 설치·운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입 폐기물의 성상 및 에너지회수 효율 등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p> <p>제24조의2 (에너지회수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 및 제34조의5에 따른 전처리시설 등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의 공급체계 및 수요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2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①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질(이하 "부산물"이라 한다)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부산물(이하 "지정부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사업자————.</p> <p>②(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27조 내지 제30조 (현행과 같음)</p> <p>제3장 자원순환사회의 기반 조성</p> <p>제31조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p> <p>①———— ----- 순 환 이 용———— ————.</p> <p>1. (현행과 같음)</p> <p>2의2. 제24조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p> <p>3.~6. (현행과 같음)</p> <p>②, ③ (현행과 같음)</p> <p>제 34조 의 4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p> <p>①-----순환자 원----- — ② (현행과 같음)</p>
---	---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2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광역적으로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_\_\_\_\_ 순 환 자 원 \_\_\_\_\_

제34조의5(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의 최종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처리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2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최종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의6(자원순환사회의 평가기준 및 지표 등) ①환경부장관은 천연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및 처리 등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지표를 설정·운영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지표에 따라 폐기물의 순환이용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원순환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의7(자원순환 정보의 제공 등) ①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적절한 처리에 관한 지식·정보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적절한 처리에 관한 지식·정보 등을 생산·보급하고 국내 발생 및 수·출입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의8(협약의 체결)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재활용사업자·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p>〈신 설〉</p> <p>제6장 보칙 〈신 설〉</p>	<p>②제1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③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34조의9(자원순환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①국가는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교류 및 제공, 국제회의의 유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원의 순환이용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li> <li>2. 자원의 순환이용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li> <li>3. 자원의 순환이용에 관한 전시회·세미나의 개최</li> <li>4.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li> <li>5. 기타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제4장 보칙</p> <p>제35조의2(재정적·기술적 지원) 국가는 자원순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8조의2에 따른 제품의 자원순환성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li> <li>2. 제15조에 따른 제품자등이 제품 또는 부품을 재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 및 시설설치 등</li> <li>3. 제34조의5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운영</li> <li>4. 제34조의9에 따른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li> <li>5.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형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제35조의3(법제상의 조치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형성을 위한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	--



제36조 (보고 및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등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3.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4. 폐기물배출자
5. 재활용의무생산자
6.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7. 제품 가격에 반용기보증금을 포함시킨 제품의 제조자등
8. 재활용지정사업자
9.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
10.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1. 조합

② (생략)

③제1항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37조 (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자원재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생략)
3. (생략)

제 36조 (보 고 및 검 사 등 )

①\_\_\_\_\_

1.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는 제조자등
2.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3.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등
4.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5.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6. 제12조의2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7. 제15조의2에 따른 제품 가격에 회수·재사용보증금을 포함시킨 제품의 제조자등
8.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9.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10. 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11. 제24조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13. 제25조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4. 제27조에 따른 조합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동항제6호 및 동항제8호 내지 제14호\_\_\_\_\_.

제 37조 (관 계 기 관 의 협 조 )

\_\_\_\_\_

1. 자원의 순환이용\_\_\_\_\_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7장 벌칙

제41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5.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 6의2.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 6의3.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 6의4. 제2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3. (생략)

제5장 벌칙

제41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감량지침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한 자
5.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6.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7.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8.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9.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1. 제2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의2제2항—————
- 2.~3. (현행과 같음)